

대학평의위원회 운영규정

2007. 05. 15. 최초제정	2019. 06. 03. 부분개정
2008. 10. 07. 부분개정	2020. 06. 01. 부분개정
2009. 05. 01. 부분개정	2021. 02. 01. 부분개정
2012. 08. 01. 부분개정	2025. 06. 01. 부분개정
2018. 04. 01. 부분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교법인 청운학원 정관 제31조의2 규정에 의하여 대학평의위원회(이하 “평의위원회”라 칭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평의위원회는 당해 대학 교수, 직원, 조교 및 학생을 대표 할 수 있는 자. 그리고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는 11인 이상의 평의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1.02.01.>

1. 교수 3인
2. 직원 2인
3. 조교 및 학생 각 1인<개정 2021.02.01.>
4. 대학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이하 “외부 평의원”이라 한다) 4인 이상<개정 2021.02.01.>

② 평의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제1항의 각 단위 중. 어느 한 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평의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3조(자격) ① 평의위원회 각 구성 단위별 평의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수 평의원은 대전보건대학교의 전임교원으로서 2년 이상 근속한 재직 자.
단, 보직처장. 단장. 부속기관장은 제외 함.
2. 직원 평의원은 대전보건대학교의 정규직원으로서 2년 이상 근속한 재직 자.
단, 보직처장은 제외 함.
3. 조교평의원은 대전보건대학교에서 조교로 재직 중인 자<개정 2020.06.01., 2021.02.01.>
4. 학생 평의원은 대전보건대학교 재학생<신설 2021.02.01.>

② 제1항의 자격 외에도 각 평의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4조(선출 및 위촉) ① 평의원은 다음 각 호에 의한 선출과 추천에 의하여 총장이 위촉한다.

1. 교수 평의원은 학칙이 정한 전체 교수회에서 “교수평의원 선거규정”에 의거 선출하여 추천한 자를 총장이 위촉한다.
2. 직원 평의원은 직원회의에서 선출하여. 추천한 자를 총장이 위촉한다.
3. 조교 평의원은 조교 전체회의에서 추천한 자를 총장이 위촉하고 학생 평의원은 총학생회에서 추천한 자를 총장이 위촉한다.<개정 2021.02.01.>
4. 외부 평의원은 동문. 또는 각계의 전문가와 대학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덕망이 있는 인사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개정 2021.02.01.>

②평의원의 선출과 관련된 절차 및 과정 등은 따로 정한다.

제5조(평의원의 임기) ①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으며, 학생 평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또한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②총장은 평의원 임기만료 30일전까지 각 평의원 구성단체에게 서면으로 추천을 의뢰하고 각 구성단체는 추천을 의뢰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총장에게 평의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③평의원 임기 중 결원이 발생한 경우 총장은 2개월내 각 평의원 구성단체에게 서면으로 평의원 추천을 의뢰하고 각 구성단체에서는 추천을 의뢰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평의원을 추천하여야 한다.<개정 2025.06.01.>

제6조(평의원 자격상실) ①교수 평의원과 직원 평의원 및 조교 평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분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신분 변동일로부터 평의원 자격을 상실한다.<개정 2021.02.01.>

1. 휴직 및 퇴직
2. 징계에 의한 직무해제
3. 사임서를 제출한 때
4. 평의원이 그 직무를 6개월 이상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②학생 평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분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신분 변동일로부터 평의원 자격을 상실한다.

1. 휴학 및 졸업
2. 학칙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처분<개정 2020.06.01.>
3. 3개월 이상의 교환 학생으로 파견
4. 기타 사유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제7조(의장과 부의장) ①평의원회에 의장과 부의장 1인을 둔다.

②의장과 부의장은 평의원회에서 호선하되 그 임기는 평의원 임기와 같다.

③의장은 평의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하고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 유고 시 이를 대리한다.

제8조(간사) ①평의원회의 행정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간사는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제9조(회의소집) ①평의원회 정기회의는 상반기, 하반기 연 2회를 원칙으로 한다.

②평의원회 회의 소집 시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밝혀 평의원에게 사전 공지한다.<개정 2018.04.01.>

제10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평의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개정 2019.06.03.>

제11조(기능) ①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3호 내지 제5호의 경우 각각 자문에 한한다.

1.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3. 대학의 현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4. 대학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대학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7. 대학평의원회의 규정의 제정 및 개정

8. 그 밖의 교육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 대학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총장은 평의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총장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개방이사 추천위원회 구성) ①대학평의원회에 개방이사 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개방이사추천위원회의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2018.04.01.>

③삭제 <2018.04.01.>

제12조의2 삭제 <2018.04.01.>

제12조의3 삭제 <2018.04.01.>

제13조(출석 및 자료요청)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교직원을 평의원회에 출석케 하여 의견을 듣거나 서면으로 된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비밀유지) 평의원 및 관계 교직원은 평의원회를 통하여 알게 된 사항에 대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회의록) ①평의원회 회의록은 출석의원 전원이 서명 날인하여야 하고, 심의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평의원회는 회의 종결 후 10일 이내에 당해 회의록을 대학 홈페이지를 통하여 3개월 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평의원회에서 비공개로하기로 의결한 사항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개정 2018.04.01., 2021.02.01.>

제16조(예산) 총장은 평의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비를 포함한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운영세칙) 의장은 이 규정의 운영을 위하여 평의원회 심의를 거쳐 운영세칙을 둘 수 있다.

제18조(담당부서) 대학평의원회에 관련 사무는 사무분장 규정에서 정하는 담당부서에서 담당한다.<신설 2018.04.01.>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 후, 최초로 구성하는 평의원회 평의원의 임기는 2009년 5월 14일까지로 한다. 단, 최초로 위촉된 학생 평의원의 임기는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8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10월 7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5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조교 평의원에 관한 사항은 2021년 제1차 대학평의원회 회의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